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1506

제출년월일 : 2006.11. 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□ 제안이유

○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여 안산시장이 지정하는 체육시설, 교통시설, 문화사업 등의 위탁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.

□ 주요골자

가. 총 칙(안 제1장)

○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
○ 공단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안산시가 전액 출자하고,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함(안 제4조).

○ 공단의 목적, 명칭, 임직원에 관한 사항 등 정관의 기재사항을 정함 (안 제5조).

○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도록 함(안 제6조).

나. 임원 및 직원(안 제2장)

○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하며, 임원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(안 제7조).

○ 공단의 이사장은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시장이 임면하도록 함(안 제8조).

○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,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(안 제11조).

다. 사 업 (안 제3장)

○ 노외 및 노상주차장 관리 운영 등 공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 (안 제16조).

○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을 정함(안 제17조).

라. 회 계 (안 제4장)

○ 공단사업의 세입처리는 안산시 세입으로 함(안 제 18조).

○ 공단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하도록 함(안 제19조).

○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도록 함(안 제21조).

○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기금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3조).

마. 감 독(안 제5장)

○ 시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하고, 공단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, 인사규정, 임직원의 보수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·개정·폐지에 관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(안 제26조).

바. 보 칙(안 제6장)

○ 시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8조).

○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공단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을 파견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9조).

☐ **제정조례안 : 별첨**

☐ **관계법령발췌서 : 별첨**

☐ **관련사업계획서 : 별첨**

☐ **예산수반사항 : 자본금 660,000천원(2007년 본예산)**

☐ **사전예고 결과 : 의견 없음**

○ 입법예고 : 2006. 9. 30 . ~ 2006. 10. 20.(20일)

☐ **기타 참고사항 : 해당사항 없음**

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안산시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함으로서 시민의 편익도모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법인격) 안산시시설관리공단(이하 "공단" 이라 한다)은 법인으로 한다.

제3조(사무소) ①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.

②공단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산시장(이하 "시장" 이라 한다)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.

제4조(자본금) ①시장은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.

제5조(정관)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1. 목적
2. 명칭
3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4. 자본금에 관한 사항
5. 사업에 관한 사항
6. 임·직원에 관한 사항
7.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
8. 이사회에 관한 사항
9.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
10. 공고에 관한 사항
11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12. 기타 필요한 사항

②공단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제6조(설립등기)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제2장 임원 및 직원

제7조(임원) ①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하며, 임원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.

②이사장·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하게 할 수 있다.

제8조(이사장) ①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,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56조의2 규정에 따라 구성하는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.

②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③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.

제9조(이사) ①이사는 7인 이하로 두되 이사장과 이사 1인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 이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.

②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. 다만,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③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.

제10조(감사) ①감사는 시장이 임면한다.

②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.

제11조(이사회) ①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.

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
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다만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⑤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⑥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제12조(임원의 대표권 제한) ①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자신의 이익과 공단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.

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이를 대리한다.

제13조(비밀누설 금지 등) 공단의 임·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4조(이사회의 참여제한)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.

제15조(직원의 임면)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.

제3장 사 업

제16조(사업) 공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.

1. 노외 및 노상주차장 관리 운영
2.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 및 관리
3. 주구운동장 및 체육시설물 관리 운영
4. 공원 및 녹지 내 시설물 관리 운영
5. 국가, 다른 지방자치단체, 기타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하기로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
6. 기타 시장이 위탁하는 공공시설물 관리 운영

제17조(대행사업의 비용부담) ①공단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위·수탁계약에 의한다.

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.

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한다.

제4장 회 계

제18조(세입) 공단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은 안산시 세입으로 한다.

제19조(사업연도) 공단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.

제20조(회계원칙 등) ①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.

②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으며,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.

제21조(사업계획 및 예산) ①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개시 6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.

②공단의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
④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제22조(손익금의 처리) ①공단은 결산한 결과 이익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

1. 이월결손금의 보전
2. 이익준비금의 적립
3.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금의 적립

②공단은 결산한 결과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.

1. 이익준비금으로 보전
2. 사업준비적립금으로 보전
3. 결손금으로 차기이월

제23조(기금조성 등) ①이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단에 기금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제24조(단기차입금 등) ①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.

②공단은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,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.

제25조(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) ①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.

②시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공유재산("물품" 을 포함한다)을 무상대부("무상사용수익" 을 포함한다)할 수 있다. 다만, 공용,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5장 감 독

제26조(감독) ①시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.

②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1.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

2. 인사규정, 임직원의 보수규정(연봉제규정, 복리후생규정 포함), 퇴직금규정(명예퇴직규정 포함) 및 회계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3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

제27조(보고 및 검사 등) 시장은 공단의 업무·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.

제6장 보 칙

제28조(권한의 위탁) 시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제29조(공무원의 파견) 시장은 이사장이 요청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.

제30조(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·관리) 시장은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실·과·소와 동일하게 평정·관리한다.

제31조(공인의 비치) 공단은 수탁사업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「안산시 공인 조례」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·사용할 수 있다.

제3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권리 의무의 승계)공단은 이 조례의 시행 후 공단의 설립 및 사업과 관련된 시 출자 및 관리 위탁 자산에 관한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.
제3조(예산의 경과조치) ①이 조례에 의하여 공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.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공단의 당해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.
③설립 년도의 예산은 공단설립 후 1월 이내에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제4조(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한 경과조치) 공단의 최초의 사업연도는 공단 설립일로부터 당해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소관 실·과		기획예산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기획예산과 유 동 열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투자분석팀장 조 익 증
	담 당 자 성명·전화	조 익 증(2058)

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1506

제안년월일 : 2006.12.21.
제 안 자 : 의회행정위원장

□ 수 정 이 유

○ 일부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, 이사장 후보 추천 규정을 명확히 하며, 준용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함.

□ 주 요 골 자

○ 이사장 후보 추천 규정을 명확히 함.(안제8조제2항)

○ “나머지 이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”를 “나머지 이사는 비상임으로 한다”로 수정함.(안제9조제1항)

○ 준용규정을 신설함.(안제32조)

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동조 제2항내지 동조 제3항을 동조 제3항내지 동조 제4항으로 한다.

② 추천위원회는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의 절차에 의하여 모집한 자 중에서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.

제9조 제1항 중 "나머지 이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"를 "나머지 이사는 비상임으로 한다"로 한다.

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제32조를 제33조로 한다.

제32조(준용규칙)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및 예산회계법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제8조(이사장) ①(생략)	제8조(이사장) ①(원안과 같음)
< 신 설 >	② 추천위원회는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의 절차에 의하여 모집한 자 중에서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.
② (생략) ③ (생략)	③ (원안 제2항과 같음) ④ (원안 제3항과 같음)
제9조(이사) ①이사는 7인 이하로 두되 이사장과 이사1인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 이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.	제9조(이사) ①이사는 7인 이하로 두되 이사장과 이사1인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 이사는 비상임으로 한다.
< 신 설 >	제32조(준용규정) 이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및 예산회계법의 규정을 준용한다.
제32조 (생략)	제33조(원안 제32조와 같음)